

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일부 변경공고

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관련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2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1. 변경내용

- 8. 필기시험 가산점 -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기준(기존 공고 14p)

< 당초 >

- 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
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<참고사항>

-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- 취업지원대상자 여부, 가점비율 등은 응시자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(☎1577-0606)에서 확인



< 변경 >

- 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
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<참고사항>

-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- **보훈청 추천 경력경쟁 구분모집의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 본문(가산점 합격자의 상한)을 적용하지 아니함**
- 취업지원대상자 여부, 가점비율 등은 응시자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(☎1577-0606)에서 확인

2. 기타사항

- 본 변경 공고문 이외의 내용은 「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」(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-85호)와 동일하오니,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당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훈청 추천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관련 문의>

·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(☎02-2125-0840)

<기타 시험 관련 문의>

· 서울특별시 인사과(☎02-2133-5711)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채용과(☎02-3488-2323)